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일정

구분	일자	신청방법
청약일정	2024.04.30(화) 09:00 ~ 17:30	청약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

※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접수

(10:00~14:00, 견본주택 접수시간은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과 상이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, 은행창구접수는 불가합니다.)

※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불가

신청자격 및 선정방법

구분	내용
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(태아 및 입양을 포함)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임신 : 임신진단서 제출 ② 입양 : 입주시까지 입양 유지 ③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 부양 :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정 순서 : ① 지역 → ② 배점 → ③ 미성년 자녀수 →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(연,월,일 비교) 높은 순 → ⑤ 추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(익산시) 거주자가 기타지역(전북특별자치도) 거주자보다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”에 의한 점수 순 동일점수로 경쟁 발생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,월,일 비교)이 많은 자 순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
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계	100			
미성년 자녀수 (1)	40	4명 이상	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※ 자녀 2명 이상(24.03.25 개정)
		3명	35	
		2명	25	
영유아 자녀수 (2)	15	3명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
		2명	10	
		1명	5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	한부모 가족	5	
무주택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해당 시·도 거주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 지역(익산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입주자저축 가입기간(6)	5	10년 이상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